

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다. 지방재정법 제40조

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실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라. 지방공기업법 제35조

①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'97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
세입·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
번호 69

제출년월일 : 1998.9.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

하여 별첨과 같이 세입·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받고자 함.

2. 결산개요

- 세입세출예산액 : 금 2,896,941,334천원
- 세 입 결 산 액 : 금 3,053,235,932천원
- 세 출 결 산 액 : 금 2,826,457,256천원
- 세 계 잉 여 금 : 금 226,778,676천원
- 명 시 이 월 액 : 금 36,166,564천원
- 사 고 이 월 액 : 금 133,753,766천원
- 계 속 비 이 월 : 금 20,346천원
- 국고보조금잔액 : 금 0
- 순세계잉여금 : 금 56,838,000천원

3. 근 거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
- 지방자치법 제120조
-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

4. 제안설명 : 별첨

서울특별시의회정발전연구팀
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개선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정발전연구팀(이하 "의정발전연구팀"이라고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의정발전연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102인 이내의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으로 보하며 직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7급 이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른 유희인력을 활용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의정발전연구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방자치발전제도에 관한 사항
 2. 서울특별시의회발전에 관한 사항
 3. 서울특별시의회 의안·청원 관련자료의 수집·연구·검토
 4. 의원의 지시사항 처리 등
- ② 팀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팀원의 사무를 지정한다.

제4조(근무명령 등) 의정발전연구팀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원 근무명